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박용갑 · 이광희
최혁진 · 김영배 · 양부남
김한규 · 안태준 · 염태영
손명수 · 김우영 · 문진석
송재봉 · 강준현 · 문정복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.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.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,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,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

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(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3항제2호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65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공사가 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
성사업
 - 나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
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
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
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
다.

